

부천시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11월 13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9년 11월 1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5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12. 18) 상정
- 제15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12. 18) 원안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시립도서관장 이진선)

가. 제안이유

- 새마을운동중앙회의 명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 문장을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문장을 시민들이 잘 이해하기 쉽게 보완·정비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새마을운동중앙회의 명칭을 정비함(안 제6조)
 -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를 새마을운동중앙회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없음 있음

나. 반대토론

없음 있음

5. 심사결과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없음 있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있음

부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를 “부천시 새마을이동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이상 10인이하”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문고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 의 자중 문고회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명

2. 새마을문고 지도자 2명 이상

3. 그 밖에 독서운동 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자 3명 이상

제5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3개월전까지”를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3개월 전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고, “당해
회계년도”를 “해당 회계연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 회계연도가
개시되기전까지”를 “해당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로 하고, 같은 조제
5항 중 “회계년도 경과후 3월이내”를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1개차량당”을 “1개의 차량당”으로 하며, “2명이상”을
“2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 년도의 새마을운동중앙
협의회급여규정”을 “해당 연도의 새마을운동중앙회 급여규정”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임용기준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을 “임용기준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520호
의결 년월일	2009. 12. 23. (제157회)

제출년월일 : 2009. 11. 16.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새마을운동중앙회의 명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 문장을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문장을 시민들이 잘 이해하기 쉽게 보완·정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새마을운동중앙회의 명칭을 정비함.(안 제6조)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 새마을운동중앙회

부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를 “부천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이상 10인이하”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문고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문고회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명
2. 새마을문고 지도자 2명 이상

3. 그 밖에 독서운동 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자 3명 이상

제5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3개월전까지”를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3개월 전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2항에 따라”로 하고, “당해 회계년도”를 “해당 회계연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 회계연도가 개시되기전까지”를 “해당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로 하고, 같은 조제5항 중 “회계년도 경과후 3월이내”를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1개차량당”을 “1개의 차량당”으로 하며, “2명 이상”을 “2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 년도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급여규정”을 “해당 연도의 새마을운동중앙회 급여규정”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임용기준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을 “임용기준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p>제5조 (예산 및 결산) ①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부천시 보조금과 <u>기타수입</u>으로 한다.</p> <p>②문고지부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을 거쳐 매년 <u>회계연도가</u> 개시되기 <u>3월전까지</u> 시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③시장은 <u>제2항의</u>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보조금의 금액을 조정하여 <u>당해 회계연도</u>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④문고지부 회장은 부천시의 예산에 계상된 보조금의 금액이 확정된 후 운영위원회의 결을 거쳐 <u>당해 회계연도가</u> 개시되기 전까지 이동도서관 예산안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⑤문고지부 회장은 <u>회계연도</u> 경과후 <u>3월이내</u>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5조(예산 및 결산) ① ----- ----- --<u>그 밖에</u>-----.</p> <p>②----- ----- <u>회계연도가</u> 개시되기 <u>3월</u> 전까지 ----- -----.</p> <p>③---<u>제2항에</u> 따라 ----- -----<u>해당</u> <u>회계연도</u> -----.</p> <p>④ ----- ----- -----<u>해당</u> <u>회계연도가</u> 개시되기 전까지 ----- -----.</p> <p>⑤ ----- <u>회계연도</u> 경과 후 <u>3개월</u> 이내 ----- ----- -----.</p>

현행	개정안
<p>제6조 (직원임용) ①이동도서관 직원은 문고지부 회장이 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새마을 문고중앙회 경기도지부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한다.</p> <p>②이동도서관에는 <u>1개차량당</u> 사서 1명, 운전원 1명을 포함한 <u>2명</u>이상의 직원을 둔다.</p> <p>③이동도서관 직원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당해 년도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급여규정을 준용한다.</p>	<p>제6조(직원임용) ①</p> <p>-----</p> <p>-----</p> <p>-----</p> <p>-----</p> <p>② ----- <u>1개의 차량당</u> -----<u>2명</u> 이상 -----.</p> <p>③-----</p> <p>----- <u>해당 연도의 새마을운동중앙회</u> ----- <u>급여규정</u> -----.</p>
<p>제7조 (지도·감독) ① (생략)</p> <p>②이동도서관의 직원 임용기준 등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새마을문고중앙회장이 별도로 정한다.</p> <p>③새마을문고중앙회 경기도지부 회장은 이 조례 및 제2항의 새마을문고중앙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u>의하여</u> 문고지부 회장을 지도·감독한다.</p>	<p>제7조(지도·감독)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임용기준</u> ----- <u>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u> -----</p> <p>-----</p> <p>-----</p> <p>③</p> <p>-----</p> <p>-----</p> <p>-----</p> <p>----- <u>따라</u> -----</p> <p>-----</p> <p>-----.</p>